

1시간 행정법

2017년 국가직 7급 추가선발

정답표 (나 책영)

③②②②② ①②③①②
①①④①② ③③③④④

01

③

351. 관련 공무원에게 작위의무를 명하는 법령 규정이 없는 경우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법령에 위반하여’라고 함은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정하여져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상당한 우려가 있어서 국민의 생명 등을 보호하는 것을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가 초법규적·일차적으로 그 위험의 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국민의 생명 등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여진 대로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그와 같은 공무원의 부작위를 가지고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에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작위의무를 명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는 때라면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하여 침해되는 국민의 법익 또는 국민에게 발생하는 손해가 어느 정도 심각하고 절박한 것인지, 관련 공무원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하여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경주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택구입대부제도에 관하여 전화로 문의하고 대부신청서까지 제출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에게서 지급보증서제도에 관한 안내를 받지 못하여 대부제도 이용을 포기하고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보증서제도를 안내하거나 설명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그 위반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판 2012.07.26. 2010다95666) 【cf】‘법령에 위반하여’라 함은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정하여져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X)

02

②

424. 경정처분의 경우 소의 대상 - 경정처분을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개별 검토)

①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과 증액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어서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고 오직 증액경정처분만이 재송의 대상이 되어 납세의무자로서는 증액된 부분만이 아니라 당초 처분에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도 그 위법 여부를 다룰 수 있는 것이지만, 증액경정처분이 제척기간 도과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액부분만이 무효로 되고 제척기간 도과 전에 있었던 당초 처분은 유효한 것이므로, 납세의무자로서는 그와 같은 증액경정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초 처분에 의하여 이미 확정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다시 위법 여부를 다룰 수는 없다(흡수설). (대판 2004.02.13. 2002두9971)

【cf】취소사유인 절차적 하자가 있는 당초 과세처분에 대하여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증액경정처분에 승계되지 아니한다(O)

② 과세관청이 조세부과처분을 한 뒤에 그 불복절차과정에서 국제청장이나 국제심판소장으로부터 그 일부를 취소하도록 하는 결정을 받고 이에 따라 당초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경우 위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투는 경

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된다 할 것이고, 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도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역흡수설). (대판 1991.09.13. 91누391)

03

②

공법관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관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행위

04

②

84.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행위의 법적 성질 (행위요건적 신고)

[1] 식품위생법 제25조 제3항에 의한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단순히 양도·양수인 사이에 이미 발생한 사법상의 사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cf】관할관청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의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양도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효과를 완성시키는 의미에서의 인가처분뿐만 아니라 양수인에 대해 양도인이 가지고 있던 면허와 **동일한 내용의 면허를 부여하는 처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대판 1994.08.23. 94누4882) / 채석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채석허가 취소처분에 대하여 수허가자의 지위를 양수한 양수인에게 그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적극) (대판 2003.07.11. 2001두6289)

[2] **사실상 영업이 양도·양수되었지만 아직 승계신고 및 그 수리처분이 있기 이전**에는 여전히 종전의 영업자인 양도인이 영업허가자이고, 양수인은 영업허가자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어서 행정제재처분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 및 그 사유가 있다고 하여 행하는 행정제재처분은 영업허가자인 **양도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그 양도인에 대하여 행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양도인이 그의 의사에 따라 **양수인에게 영업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으로 하여금 영업을 하도록 허락하였다면** 그 양

수인의 영업 중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은 영업허가자인 **양도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판 1995.02.24. 94누9146)

05

②

ㄴ. (O) : 315. **계고서라는 명칭의 1장의 문서**로서 일정기간 내에 위법건축물의 자진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그 소정기한 내에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할 뜻을 미리 계고한 경우,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적극)

계고서라는 명칭의 **1장의 문서**로서 일정기간 내에 위법건축물의 자진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그 소정기한 내에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할 뜻을 미리 계고한 경우라도 건축법에 의한 **철거명령**과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계고처분은 독립하여 있는 것으로서** 각 그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것이다. (대판 1992.06.12. 91누13564)

ㄷ. (O) : 314. 건물철거 대집행계고처분의 요건 및 그 **주장·입증책임 (처분 행정청)**

건축법에 위반하여 건축한 것이어서 철거의무가 있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그 철거의무를 대집행하기 위한 계고처분을 하려면 다른 방법으로는 이행의 확보가 어렵고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허용되고 이러한 요건의 **주장·입증책임은 처분 행정청**에 있다. (대판 1996.10.11. 96누8086)

06

①

504. 주무부장관이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시·도에 대하여 행한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허용되는지 여부 (소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은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서만 소를 제기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주무부장관이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시·도에 대하여 행한 **시정명령**에 대하여도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판 2014.02.27. 2012추183)

07

②

191. **형사법원에서 행정행위의 적법여부가 당해 범죄구성요건의 충족여부 판단의 선결문제인 경우, 형사법원이 독자적으로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긍정설)**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구 도시계획법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나 **조치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하고,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는 한 조치명령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 (대판 1992.08.18. 90도1709)

08

③

L.(O)

193.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경우 확정력의 의미**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확정력은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룰 수 없다는 의미일 뿐**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대판 1993.04.13. 92누17181)

정력의 의미

[2] 종전의 **산업재해요양보상급여취소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후 다시 요양급여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그것이 거부된 경우 새로운 거부처분으로서 위법 여부를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 종전의 산업재해요양보상급여취소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되었더라도 요양급여청구권이 없다는 내용의 법률관계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 이상 다시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그것이 거부된 경우 이는 새로운 거부처분으로서 위법 여부를 소구할 수 있다**.

09

①

519. 자연공물의 경우 형체적 요소의 소멸 외에 공용폐지가 필요한지 여부 (필요설) - 공용재산인 갯벌이 간척에 의하여 사실상 갯벌로서의 성질을 상실한 경우, 당연히 잡종재산이 되는지 여부 (소극) 및 공용폐지의 의사표시 방법 및 그에 대한 입증책임 (시효취득 주장자)

[1] 공유수면인 갯벌은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이른바 자연공물로서 간척에 의하여 **사실상 갯벌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였더라도 당시 시행되던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용도폐지를 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잡종재산으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 【cf】판례에 의하면 하천과 같은 자연공물의 경우에는 그것이 자연의 상태에 있어서 이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 공용개시행위를 요함이 없이 그 자체로서 공물로 성립한다(O) / 자연공물인 국유하천부지는 별도의 공용개시행위(공용지정)가 있어야 행정재산이 된다(X)

[2]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으나 적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행정재산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원래의 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는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대판 1995.11.14. 94다42877) 【cf】「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X)

본문판례

【판시사항】

[1]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경우 확

10

②

11.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복수기준설) 도표 참조

ㄱ. ㄷ. ㄹ : 공법관계

ㄴ : 사법관계

11

①

쟁점판례 204. -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⑥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위원회가 그 구성방법 및 절차에 관한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위배하여 군수와 주민대표가 선정·추천한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은 채 임의로 구성되어 의결을 한 경우,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처분의 하자는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하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대판 2007.04.12. 2006두20150)

12

①

365. 입법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예외적 긍정설)

입법부가 법률로써 행정부에게 특정한 사항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 내지 법치행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법함과 동시에 위험적인 것이 되는바, 구 군법무관임용법 제5조 제3항과 군법무관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가 군법무관의 보수를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이상, 위 법률의 규

정들은 군법무관의 보수의 내용을 법률로써 일차적으로 형성한 것이고, 위 법률들에 의해 상당한 수준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위 보수청구권은 단순한 기대이익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인정된 재산권의 한 내용이 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위 보수청구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대판 2007.11.29. 2006다3561)

13

④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③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14

①

ㄱ. (O)

6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신고체육시설업에 있어서 신고의 법적 성질과 무신고 영업의 판단 기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 제11조, 제2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 및 제25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은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으로 나누어지고, 당구장업과 같은 신고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같은법시행규칙이 정하는 해당 시설을 갖추어 소정의 양식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정의 시설을 갖추지 못한 체육시설업의 신고는 부적법한 것으로 그 수리가 거부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상태에서 신고체육시설업의 영업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무신고 영업행위에 해당할 것이지만, 이에 반하여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접수시에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수리가 거부되었다고 하여 무신고 영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판 1998.04.24. 97도3121)

15

②

쟁점판례 494.

-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조례 : ㉓ 지방의회가 조례로 정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기간 내에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조례안 (2002추23)

16

③

ㄷ. (O)

341. 지방자치단체가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정 적극)

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법 제3조 제1항, 제9조, 제93조, 도로법 제54조, 제83조, 제86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가 본래 그의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기관위임사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인므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 제81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법 제86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㉓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압축트럭 횡소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제한속도를 초과 적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한 사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 제86조의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대판 2005.11.10. 2004도2657) 【cf】양벌규정의 대상이 되는 법인에 국가는 포함되지 않지만, 기관위임사무를 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포함된다(O) [2017년 서울시 7급] / 판례는 지방자치단체도 행정형벌의 부과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본다(O) / 지방공무원이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을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된다(O) / 국가가 그의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는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O)

참조판례

【판시사항】

[1] 지방자치단체가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 국가가 본래 그의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는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로 볼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또한,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그 외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정항만순찰** 등의 업무를 위해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개조한 승합차를 운행함으로써 구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사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구 자동차관리법 제83조의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판 2009.06.11. 2008도6530)

ㄷ. (O)

320.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적극) 및 대체적 작위의무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전통적으로 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으로, 이행강제금은 부작위의무나 비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이는 이행강제금제도의 본질에서 오는 제약은 아니며,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부과될 수 있다**. 현행 건축법상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수단으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이 인정되고 있는데, 양제도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행정청은 개별사건에 있어서 위반내용, 위반자의 시정 의지 등을 감안하여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처럼 **그 합리적인 재량에 의해 선택하여 활용**하는 이상 중첩적인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헌재 2004.02.26. 2001헌바80)

17

③

280. 거부처분도 사전통지의 대상인지 여부 (부정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

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등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바,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여기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대판 2003.11.28. 2003두674) 【cf】건축허가거부처분은 사전통지의 대상이 아니므로 허가거부에 앞서 미리 그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거부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0)

18

③

쟁점판례 300.

도표 - 비공개대상 O (예외) : ⑮ 법인 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 (2003두 8302)

19

④

쟁점판례 214.

도표 - 하자의 승계 X (원칙) : ②④ **직위해제처분**
→ **직권면직처분 (X)** (84누191)

20

④

제23조(계속비) ①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年賦額)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